



문서번호 행정 2015-1108

수 신 박성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유동림 간사 02-723-5302 dryou@pspd.org)

제 목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서

날 짜 2015. 11. 27. (별첨포함 총 24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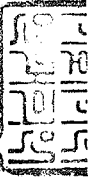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 10,800명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포에 맞아 중상을 입고 현재 사투 중인 백남기 농민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지난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 등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3. 백남기 농민은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말아달라” 고 호소하기 위해 다른 농민들과 함께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신고에 의해 개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집회로 간주하며 폭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차벽을 쏘고 심지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파마(PAVA)와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집회참가자들에게 살수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살수 차량 근처에 있던 백남기 농민의 얼굴정면을 향해 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살수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뒤로 넘어졌는데도 얼굴을 향한 살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사람이 뛰어들어 등으로 살수를 막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경찰의 살수는 계속되었습니다.

- 4. 집회 당일 이루어진 경찰의 살수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3조 제1항, 경찰장비관리규칙과 살수차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언론과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은 직사살수를 할 때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살수행위 시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에 관한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채 2500 ~ 2800rpm로 쏘았고,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 5. 이러한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행위로 현재 백남기 농민은 의식불명 상태로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막연히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든 사정만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용인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 10,800명은 이러한 위협적이고, 위법적인 폭력진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고발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

▣ 별첨자료 :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 10,800명 명단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

